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업면허 취소 규정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추가〉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198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어업면허 취소 규정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추가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어업면허 취소 규정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업면허 취소 사유에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34조제1호</u>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34조제1호·제1호의2</u> ----- ----- ----- ----- ----- ----- ----- -----.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u>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u>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	제26조(어업권의 경매) ① ----- ----- <u>제34조제1호의2</u> 및 <u>제2호부터</u> -----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장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6. (생략)

제40조(허가어업) ① ~ ④ (생략)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

2. ~ 6. (현행과 같음)

제40조(허가어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4조제1호·제1호의2-----

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구 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⑥ 제34조제1호·제1호의2-----

-----.

제50조(준용규정) ① -----

-----제34조제1호·제1호의2-----
-----.

② . ③ (생 략)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생 략)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2. ~ 5. (생 략) ②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 ----- ----- ----- ----- ----- -----. 1.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34조 제1호·제1호의2-----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

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정치망어업)과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등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마을어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면허¹⁾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을어업 및 정치망어업 면허 현황 >

- 마을어업 면허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	3,180	36	152	20	18	77	342	60	1,537	134	673	131
2022	3,177	36	154	20	18	77	336	60	1,538	134	673	131
2021	3,182	36	156	20	11	77	338	69	1,536	134	674	131

- 정치망어업 면허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3	475	1	-	5	-	82	7	14	41	78	197	50
2022	478	1	-	5	-	82	7	14	41	81	197	50
2021	478	1	-	5	-	82	7	14	41	81	197	50

* 자료 : 해양수산부

또한, 어업면허 취소사유²⁾로 ①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

1)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2) 「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를 받은 경우(필요적 취소사유), ②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어업면허를 한 경우, ③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 신고 등 위반, ④어업권의 다른 사람에게 의한 지배 금지 위반, ⑤어업권 임대차 금지 의무 위반, ⑥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 제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②~⑥ 임의적 취소사유),

이를 위반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 어업을 할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산업법」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됨.

< 면허어업 단속 현황 >

(단위: 건)

연도	업종별	무면허·무허가	허가제한 조건위반
2025	마을어업	3	-
	정치망어업	-	-
2024	마을어업	-	-
	정치망어업	1	-
2023	마을어업	1	-
	정치망어업	3	-
2022	마을어업	-	-
	정치망어업	2	2
2021	마을어업	7	3
	정치망어업	3	2

* 자료 : 해양수산부(출처: 지자체 자료 취합)

□ 현행법 제34조제6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4)에 따르면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을 위반한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4) 「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수산업법」은 면허의 대상으로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을 명시하면서 정치망어업의 정의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업법」 위반 사항으로 면허받은 수역 외의 어업의 면허 취소에 대하여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바⁵⁾, 어업면허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⁶⁾ >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제33조제1항 제8호 및 제34조제6호	경고	취소	-

5)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서 면허의 대상을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으로 명시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면허 어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구역 등을 기재하고 있다는 설명임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면허신청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에서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어구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면허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해양수산부, 경북 포항시, 부산시 수협 의견 제시).

수협중앙회와 부산시·군산시 수협은 개정안의 경우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경영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업 특성상 해류 등 영향으로 어장이 밀릴 수 있으며, 수역 이탈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면허취소를 당하는 어업권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⁷⁾.

문 의 처

02)6788-5419

7)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